

#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2020. 11. 18.수 ~ 11. 19.목  
제주도 부영호텔



#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2020. 11. 18.수 ~ 11. 19.목

제주도 부영호텔



##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목 차

추진경과 및 평가·컨설팅 결과 분석  
[ 허정 한국연구재단 팀장 ] -----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교육  
[ 현교진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 ] ----- 17

네트워크영역 우수사례 발표  
[ 김충경 목포대학교 실장 ] ----- 43



# 추진경과 및 평가·컨설팅 결과 분석

## [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경과 공유 ]

---

허정 한국연구재단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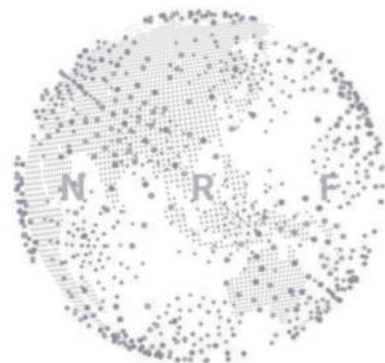






# INDEX

- 01 2020년 사업추진 경과
- 02 2020년 연차평가/컨설팅 주요내용
- 03 공통지표 2차년도 실적 분석
- 04 사업비 투자현황 및 시사점
- 05 향후 추진계획





NRF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는 한국연구재단

# 2020년 사업추진 경과

## 5050억 차등지원 확대

### 2020년 사업추진 경과



내 용	일 정	비 고
○ 2020년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	'20.3월~4월	서면의견수렴, 간담회 간담회 등
○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공지	'20.4.7	교육부
○ 협약체결(재단-대학) 및 2020년 사업비 1차 교부	'20.4.24	1차교부 : 총 74,548백만원
○ 2차년도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 '20.5.19	
○ 연차평가 실시	'20.5.25~28	
○ 연차평가 결과 및 사업비 배정금액 안내	'20.6.15	
○ 사업관리지침 개정	'20.7.9	
○ 컨설팅 실시(국립대학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공동컨설팅)	'20.7.27~30	
○ 2020년 사업비 2차 교부	'20.8.10	2차교부 : 총 67,052백만원
○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 '20.8.24	
○ 공통지표 2차년도 실적 점검	~ '20.9.7~15	
○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자료집 및 2차년도 대표사례집 발간	'20.10.20	대학별 15부 배포
○ 실무자 비대면 워크숍 실시	~ '20.11.9	



# 2020년 연차평가/컨설팅 주요내용

## 5050년 여와유가사되취음 호평대응

## 2020년 연차평가

### 연차평가 개요/결과

▪ 2019년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실시 ※ '20.5.25(월) ~ 5.28(목), 강릉시

- (평가대상) 39개 국립대학
- (평가방법) 서면평가(정성평가)
- (평가내용) 사업성과평가,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 (사업성과평가) 대학별 '19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의 우수성 및 차년도 개선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
  -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대학별 별도 작성·제출한 '19년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 대비 추진실적의 우수성 및 차년도 개선계획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성과평가,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각각 취득총점 기준 등급 부여 (절대평가)

등급	총점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등				합계	
		사업성과	네트워크	지역중심대		교원양성대		사업성과	네트워크
				사업성과	네트워크	사업성과	네트워크		
A	90점이상	1개교	1개교	4개교	4개교	1개교	1개교	6개교 (15.4%)	6개교 (15.4%)
B	80점이상 ~90점미만	7개교	7개교	12개교	12개교	7개교	8개교	26개교 (66.7%)	27개교 (69.2%)
C	80점미만	1개교	1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2개교	7개교 (17.9%)	6개교 (15.4%)
계		9개교	9개교	19개교	19개교	11개교	11개교	39개교	39개교



### 2020년 연차평가



#### 연차평가 주요 의견(보완 사항 위주로..)

##### 사업성과

- (추진체계) 중복투자 집행방지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뿐 아니라, 전체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 등 구성을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예산집행) 과제별 편차가 존재하거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차년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세부사업) 일부 프로그램 내용이 기존 시행해왔던 기본적 교육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학 고유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 수행 필요
- (성과관리) 자율지표 중 단순 투입지표 사용 지양, 목표값 설정 시 과년도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연차별 성과목표값 제시 필요

##### 네트워크

- (추진체계)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추진조직의 체계성과 구체성에 대한 보완 필요
- (성과,지속성) MOU나 포럼 운영 등의 행사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동사업 또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존 운영하던 프로그램 형태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델 개발

### 2020년 컨설팅



#### 컨설팅 개요/결과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실시 ※'20.7.27(월) ~ 7.30(목), 화성시

- (대상) 39개 국립대학
- (방법) 비대면 온라인 면담
- (중점 내용)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공동 컨설팅
  - (사업 중복성)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의 중복·유사성을 검토하고, 각 사업 취지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자문
  - (세부사업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대학의 중점추진과제별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고도화 방향 자문

##### (컨설팅 결과 활용)

- 대학별 컨설팅 종합의견서를 참고로 사업 시행에 반영(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컨설팅 결과 피드백: 전체 수용 21개 대학, 일부 수용 18개 대학
- 사업 중복성 검토내용에 대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시 국립대학육성사업 컨설팅 종합의견서 제공

##### (컨설팅 만족도)

- 컨설팅 진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8.9점**(10점만점) ※ 전년도(2019년) 만족도 8.47점(10점만점) 대비 향상





2020년 컨설팅



컨설팅 주요 의견(권고 사항 위주로...)

사업 중복  
가능성 검토

- 중복집행 방지를 위해 재정지원사업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단, 일부 중점추진과제(특화전략 및 발전전략, 고등교육기회 확대)의 경우,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약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립대학육성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 기획 필요
-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취지 및 목표와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대학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성격이 명확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추가적인 검토 및 조정 권고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 (예산집행계획) 목적과 용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권고
-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립대학육성사업 본연의 취지인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특화 발전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
- (성과관리) 성과지표 중 2차년도 실적값이 이미 3차년도 이후의 목표값을 상회하는 경우, 현재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값 재설정 권고
- 자율지표는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 필요. 일부 자율지표의 경우 '건수, 횟수' 등 단순 투입지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업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output 또는 outcome 지표를 포함하여 설정 권고
- (네트워크) 네트워크 지속성을 위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이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운영체계 확립 권고
- 대학 간 교류 협력사업에서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일회성 활동 및 행사개최로 구성된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공통지표 2차년도 실적 분석  
유용지표 5차년도 목표 점검



### 공통지표 실적점검 결과



#### 공통지표 2차년도 실적점검 개요

- (점검내용) 국립대학육성사업 공통지표에 대한 2차년도 실적값 및 목표달성도 조사

지표명	활용자료
(교육여건) 학생1인당 교육비, (고등교육기회균등)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비율	정보공시자료
(연구성과) 전임교원 등 1인당 연구실적	정보공시(전임)+대학제출(비전임)
(지역사회 발전기여) 대학 간 네트워크, 대학-지역사회 간 연계·협력 실적 (기초보호학문 육성) 기초보호학문분야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기초보호학문분야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지원 (국제화 역량강화) 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건수, 해외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건수	대학제출자료

- (점검절차)



### 공통지표 실적점검 결과



#### 지표별 목표달성 정도

영역	지표	단위	1차년도			2차년도		
			목표값* (A)	실적값 (B)	목표 달성도 (B/A, %)	목표값* (C)	실적값 (D)	목표 달성도 (D/C, %)
교육여건	학생 1인당 교육비	천원	13,208	13,879	105.1	13,566	14,531	107.1
고등교육기회균등	지역인재 및 기회 균형 모집 비율	%	17.6	18.7	106.2	18.5	20.6	111.3
연구성과	전임교원 등 1인당 연구실적	건	0.9961	0.9483	95.2	1.0163	0.9407	92.6
지역사회 발전기여	대학간네트워크활성화	건	58	89	152.8	82	87	106.7
	대학-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 사업 실적	건	109	119	108.7	113	143	126.3
기초보호학문 육성 (거점대)	기초보호학문분야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천원	1,971	2,222	112.7	2,013	2,210	109.8
	기초보호학문분야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지원	천원	4,484,917	4,539,116	101.2	4,278,089	5,072,456	118.6
국제화 역량 강화 (거점대)	해외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건수	건	110	117	106.4	116	111	95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건	59	64	108.5	65	74	114.2

※ 각 지표별 목표값, 실적값은 대학별값에 대한 평균값  
\* 목표값 : 사업계획 수립 당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공통지표 실적점검 결과



지표별 실적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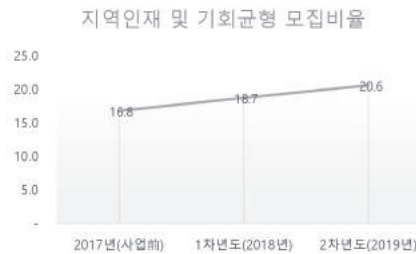
(교육여건) 학생1인당 교육비

지표	단위	기준값 (2017년)	연도별 실적값		전년 대비 증감 (B-A)
			1차년도 (2018년) (A)	2차년도 (2019년) (B)	
학생 1인당 교육비	천원	12,958	13,879	14,531	652



(고등교육 기회균등)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비율

지표	단위	기준값 (2017년)	연도별 실적값		전년 대비 증감 (B-A)
			1차년도 (2018년) (A)	2차년도 (2019년) (B)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 비율	%	16.8	18.7	20.6	1.9



공통지표 실적점검 결과



지표별 실적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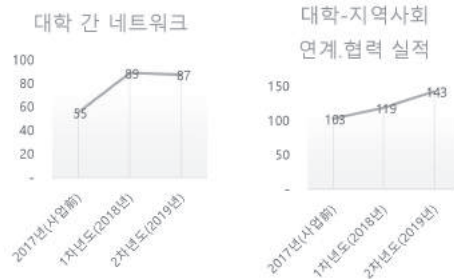
(연구성과) 전임교원 등 1인당 연구실적

지표	단위	기준값 (2017년)	연도별 실적값		전년 대비 증감 (B-A)
			1차년도 (2018년) (A)	2차년도 (2019년) (B)	
전임교원 등 1인당 연구실적	건	0.9544	0.9483	0.9407	-0.0076



(지역사회 발전기여) 대학 간 네트워크, 대학-지역사회 연계·협력 실적

지표	단위	기준값 (2017년)	연도별 실적값		전년 대비 증감 (B-A)
			1차년도 (2018년) (A)	2차년도 (2019년) (B)	
대학간네트워크활성화	건	55	89	87	-2
대학-지역사회 간 연계·협력 사업 실적	건	103	119	143	24





공통지표 실적점검 결과



지표별 실적값 추이

- (거점대-기초보호학문 육성) 기초보호학문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지원

지표	단위	기준값 (2017년)	연도별 실적값		전년 대비 증감 (B-A)
			1차년도 (2018년) (A)	2차년도 (2019년) (B)	
기초보호학문분야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천원	1,933	2,222	2,210	-12
기초보호학문분야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지원	천원	4,380,557	4,539,116	5,072,456	533,340

기초보호학문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거점대)



기초보호학문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지원(거점대)



공통지표 실적점검 결과



지표별 실적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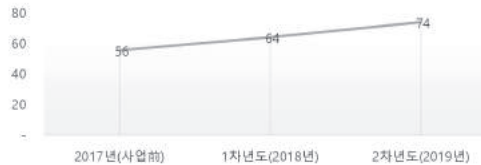
- (거점대-국제화 역량강화) 해외기관 공동연구, 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표	단위	기준값 (2017년)	연도별 실적값		전년 대비 증감 (B-A)
			1차년도 (2018년) (A)	2차년도 (2019년) (B)	
해외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건수	건	107	117	111	-6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건	56	64	74	10

해외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건수(거점대)



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거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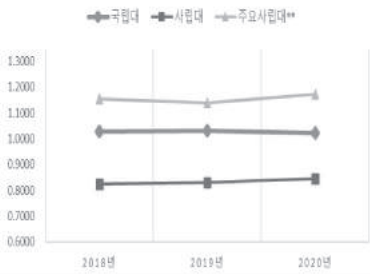


<참고> 주요지표(정보공시자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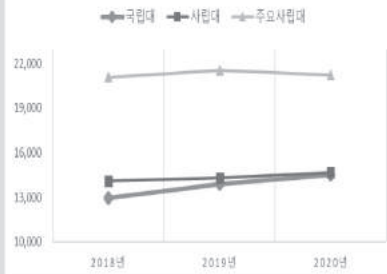
공통지표 중 정보공시 활용 지표(공시년도 기준) 연도별 추이 사립대 비교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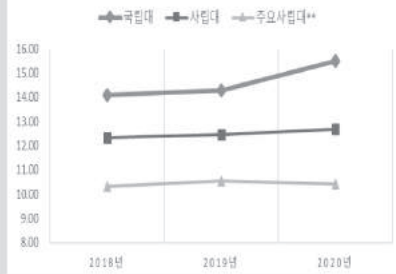
▪ 주요사립대 > 국립대 > 사립대  
사립대는 소폭 상향추세  
반면, 국립대는 오히려 하향추세 😞

학생1인당 교육비(평균)



▪ 주요사립대 > 사립대 > 국립대  
국·사립대 모두 상향추세  
특히, 국립대의 상향폭 증가 😊

기회균형모집 비율



▪ 국립대 > 사립대 > 주요사립대  
국·사립대 모두 상향추세  
특히, 국립대의 상향폭 크게 증가 😊😊  
▶ 공적 기능 강화 긍정적 메시지



사업비 투자 현황 및 시사점  
안정성 증가, 효율성 증대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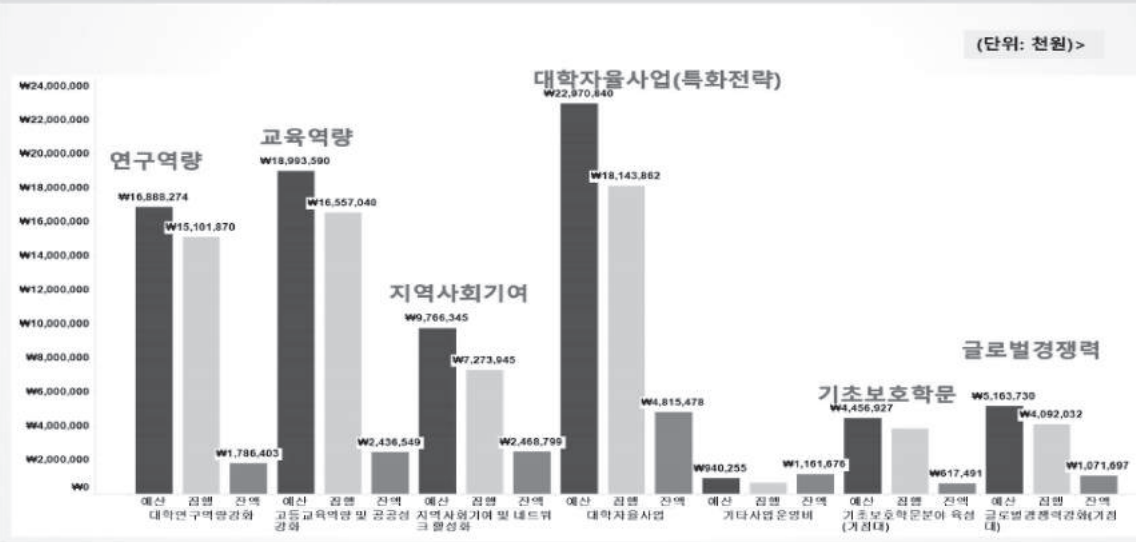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중점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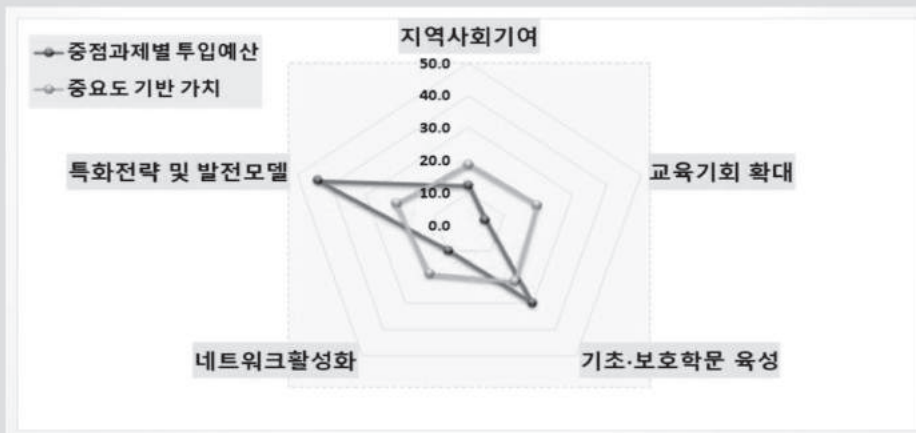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거점대 : 중점과제별 투입예산 대비 중요도기반 가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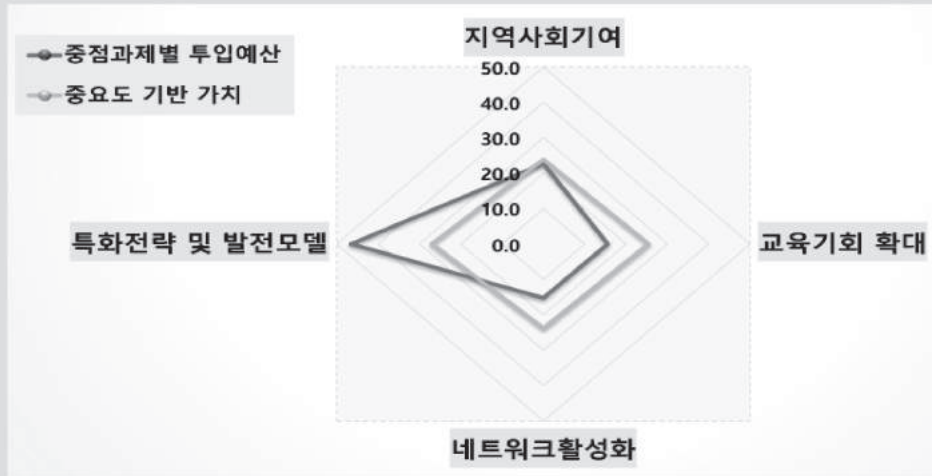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지역중심대 : 중점과제별 투입예산 대비 중요도기반 가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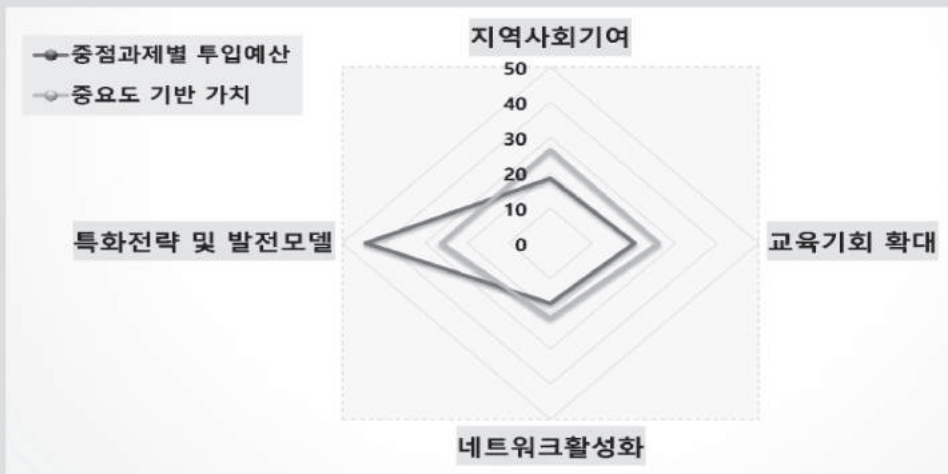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교원양성대 : 중점과제별 투입예산 대비 중요도기반 가치 비교





###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 예산규모의 적절성 진단

진단	진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기여: 예산 &lt; 중요도기반가치</li> <li>고등교육기회확대: 예산 &lt; 중요도기반가치</li> <li>기초보호학문육성: 예산 &gt; 중요도기반가치</li> <li>네트워크활성화: 예산 &lt; 중요도기반가치</li> <li>특화전략: 예산 &gt; 중요도기반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대학은 중점과제별 예산배분시 지역사회기여, 고등교육기회확대,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의 예산 비중 확대 고려할 필요</li> <li>특화전략 과제는 명확한 성과기반 세부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사업 효율화 및 예산 비중의 축소 고려할 필요</li> </ul>

###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 국립대학육성사업과 타재정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

중점과제명	진단 결과	평가 결과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분야 육성	<p>[예산집행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점대)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학생지원 예산과 유사(0.6%)</li> </ul> <p>[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사업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재정지원사업과 유사중복 거의 없음</li> </ul>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p>[예산집행 분석] 유사 사업 없음</p> <p>[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사(2.8%)</li> <li>LINC+사업과 유사(2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이 일부 포함</li> </ul>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p>[예산집행 분석] : 타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존재</p> <p>[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사(13.9%)</li> <li>LINC+사업과 유사(7.1%)</li> <li>BK사업과 유사(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차별화된 중점과제로서의 독자성 미흡</li> </ul>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대학 육성사업과 타 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LINC+사업, BK21플러스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대학 차원 노력의 적절성은 매우 높은 수준임(4.57)</li> </ul>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 중점과제의 고유한 성격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수행 필요

- 대학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국립대만의 특화 분야가 제시되지 못하고,
  - 환경개선, 연구지원, 글로벌, 특성화, 전산시스템 및 인프라, 실험실습기자재, 성과관리체제 구축 외에 성격이 다른 매우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됨
-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 국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서 적합한 세부사업 중심으로 재편
- 동 중점 과제 내 성과를 측정 및 관리하기 어려운 세부사업들의 운영을 지양하고,
  - 국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토대로 국립대학 대상 지원사업으로서의 차별화된 성과 도출 필요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 유사기능에 대한 역할 분담 <예시>

구분	국립대학 육성사업	LINC+ 사업	지역혁신플랫폼사업
	대학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기여에 주력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전반적 산학협력 추진	대학-지자체-산업체 협업체계(플랫폼)를 통한 지역 전략 산업분야 특성화 추진
지역 발전에 대한 역할 분담	-대학시설·공간의 지역사회 공유·개방 -대학 구성원(학생·교직원)의 지역사회봉사 -지역 중·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평생교육 실시 -지역현안(경제·사회·환경·문화 관련) 협의 및 연구	-대학 전반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대학의 교육과정을 기업 및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면적 개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및 취·창업교육 -기술개발·이전·사업화	-지역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특정 학문분야(학과)가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와 협업체계(플랫폼) 구축 -특정 학문분야(학과)와 연계된 지역 전략산업분야 핵심 기술 보유 실무인력양성 및 공급



사업비 투자 현황분석

※ <출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발전방향(충북대 이정미 교수)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 유사기능에 대한 역할 분담 <예시>

구분	국립대학육성사업	LINC+ 사업	지역혁신플랫폼사업
대학-지역 네트워크의 역할 분담	대학 주도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주체 간 참여중심 교류·협력체계 구축	대학 주도로 대학-산업체 간 상호지원 중심 교류·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주도로 전략산업 분야 내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의 학과 간 융합중심 플랫폼 구축
	-대학 간 네트워크: 학점교류,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동연구, 첨단기자재 공동 활용,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지자체의 지역현안(경제·사회·환경·문화 관련) 협의 및 연구	-대학 간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 공유, 확산, 경진대회, 업무협약 -대학-산업체(가족회사) 간 교류·협력: 협의회, 협약체결	-플랫폼 내 혁신기관 간 협업: 특정 학문분야 인재양성, 기술개발 협업



향후 추진 계획  
유승 호외 계획



### 향후 추진 계획(안)



#### 성과 확산 / 홍보 - 협의회

- (언론 홍보) 동아일보 기획시리즈 기사 보도 - 11월 ~ 12월, 5회 예정
- (EBS 캠페인 제작) EBS 교육방송 송출, '(가제) 국립대학, 날개를 펼쳐라' - 12월~
- (포럼) 제3회 성과 포럼 - 12월

#### 국립대학육성사업 유공자 표창

- 12월 중 확정(교육부), 제3회 성과포럼 시 표창장 수여식(예정)

#### 사업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 2020.10.31 기준 집행현황 : 전체 29.7% (최고 55%, 최저 8%) ★ 사업비 조기 집행 필요
- ※ 사업비 집행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후, 이월 범위 검토 예정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감사합니다  
무사환귀다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교육

##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및 사업비 집행 관련 FAQ]

---

현교진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





PART 1

#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2018. 4월 제정>

<2019. 3월 개정>

<2020. 7월 개정>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 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자율혁신 추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2. “지원대학”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3. “지원대학의 장”이라 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4. “사업추진단장”이라 함은 지원대학의 장이 지정 또는 임명한 교무위원급의 지위를 가진 자로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유형의 구분)** 사업의 유형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 시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거점국립대 육성
2. 지역중심대 등 육성

**제4조(사업기간)** ①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각 연도별 사업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컨설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평가 및 점검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이의 활용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9. 그 밖의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2. 평가 또는 제재 등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제8조(사업수행주체)** ①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본 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사항 준수
6. 대학의 자체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7.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교무위원급으로 사업추진단장을 임명하여 대학 내 각 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⑤ 대학은 원활한 사업수행 및 성과확산 추진, 국립대학 간 협력 등을 위하여 자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원대학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과의 협약사항에 따라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사업의 컨설팅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지원대학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원대학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대학이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3. 지원대학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원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점검 또는 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사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 과정 상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협약이 해지된 지원대학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사업비를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원대학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학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대학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및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 ② 연차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마지막연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종합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① 지원대학의 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지원대학에 대하여 사업비 삭감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제17조(자료 등의 요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추진단장 등 책임자의 출석 요구
3. 지원대학에 대한 현장방문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사업추진 과정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도 대학별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여 지원대학에 통보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확정 전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심의·의결된 예산을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 전 집행한 예산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회계연도 범위내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평가 이전에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관리)** ①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되, 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 회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는 지원대학의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과 동 지침을 따른다.



##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

- ⑤ 사업비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지원대학의 장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사업개시 1차년도에 한하여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서 정한 이월범위를 조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관리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수혜제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추진 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비 부당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회수 또는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중대한 부정·비리 발생으로 감사·행정처분 또는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의 정도,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혜제한의 범위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의무)** 지원대학의 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사업 훈령 제정 및 발령, 장관이 수립하는 매년도 사업 기본계획 등 변화 내용에 따라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9. 3. 19)**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목적

- 이 기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비 관리 및 회계연도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회계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과 동 지침을 따름
  -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기본계획, 동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PART 2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는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대학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함
-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잔액 중 이월 허용범위 내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 대학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가능(단, 사업 1차년도는 30% 범위내에서 차년도로 이월 가능)

**사업비 수혜 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
    - ※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등 직접적인 지원금은 불가능(단, 경진대회 입상 상금 등은 가능)
  -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세부 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 대학·기관과의 세부 사업 운영 및 지원비,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세부 사업 운영 및 지원비 등 집행 가능
-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
  -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하며,
  - 강사료,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강사료(p.63~66)' 기준을, 자문료 및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 내에서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학 자체기준(지침) 등을 마련하여 집행
  - 연구용역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내(p.83~84) 세부기준 준용

**사업비 지원**

- 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사업 목표와 연관된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강화와 관련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관련 비용 필수 편성
- 대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 환경개선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기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자료집

- 대학은 연도별 총 예산 범위내에서 각 세부내역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 구분

- 가. 인건비
  - 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학생 교육·실습 활동비 포함)
  - 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운영비
  - 라.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비
  - 마.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바. 장학금
  - 사. 기타사업운영경비
- ※ 세부내역별 기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별표1)”를 참조

- 대학의 경상경비는 집행 불가
- ※ 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대학 자체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여 추진 가능하며, 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립대학 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을 따름

동 개정 사업 관리 지침은 2020년 사업부터(2020.3.1.) 적용함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

**【별표1】 국립대학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

※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출예산 성질과목구분과 설정”을 따름

세부내역	정의	집행 불가사항(사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li> <li>※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li> <li>•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li> <li>※ 사업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교원 등 내부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li> </ul>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시 발생하는 비용</li> <li>• 사업계획과 연관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li> <li>- 단,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하며,</li> <li>-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강사료(p.63~66)' 기준을, 심사료 및 자문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 내에서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마련하여 집행</li> <li>- 연구용역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내(p.83~84) 세부기준 준용</li> <li>•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li> <li>• 학생 교육·연수·실습, 연구활동 관련 비용</li> <li>• 사업계획과 관련된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연수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li> <li>•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li> <li>• 현장실습 시 산업체가 별도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li> </ul>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관련 지역사회 또는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관련 비용</li> <li>- 타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li> <li>- 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비용</li> <li>- 기타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비용, 네트워크 사업 추진 관련 분담금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협의체 회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무관 경비</li> <li>- 연계 기관 자체행사 후원 또는 운영 비용</li> <li>- 연계 기관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유가증권 등</li> </ul>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세부내역	정의	집행 불가사항(사례)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환경 개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li> <li>-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보수 가능</li> <li>- 환경 개선 시 포함되는 장비 및 집기 구입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 집행 불가</li> </ul>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기자재 구입 및 리스(전자저널 포함)·임자에 소요되는 경비</li> <li>- 장비·기자재는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li> <li>-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적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자체 심의를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계획변경 후 집행</li> <li>-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li> <li>※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연구 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불가</li> <li>사업과 무관한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불가</li> </ul>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li> <li>※ 단,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li> <li>※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지급</li> </ul>	
기타사업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사업 총괄부서 운영비 포함)</li> <li>-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 등</li> <li>※ 홍보비는 사업 참여유도 또는 사업성과 홍보인 경우만 가능하되, 일반수용비에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각종 행사경비</li> <li>- 각종광고, 사업선정현수막, 대학브로셔(리플렛),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li> <li>- 연수 및 워크숍 등</li> <li>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li> <li>- 교수 개인 연구활동비 또는 학회비 등</li> </ul>



PART 2

#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 관련 FAQ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Q01.**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부교직원의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연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 개정(20.6.11)에 따라 해당 절차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부교직원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A01.**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내부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을 편성·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p.9, 이하 등 사업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내부교직원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 편성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 상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집행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은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편성된 경우,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02.** 사업비로 소속대학 교원에게 정규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A02.** 기존 정규교육과정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 불가합니다. 단,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특강 또는 비정규 과정을 개설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신규 교재개발 등에 대하여 내부교직원에게도 강사료 또는 원고료 등의 지급이 가능하며,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의 '운영수당' 목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Q03.**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의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여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강사료 또는 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지급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까?

**A03.**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7강사료(p.63~66)' 기준을, 자문료 및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6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 내에서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학 자체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Q04.**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일 10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대학 자체기준으로 일일 150,000원으로 상향하여 기준을 마련해도 되는지요?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 관련 FAQ

**A04.**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에서 대학 자체기준(지침) 마련을 하여야 하므로, 회계지침보다 상향된 기준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Q05.** 기초보호학문 분야 육성과 관련하여 신규채용된 교원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에는 내부교직원의 경우, 연구용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A05.**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에서 내부교직원에 대한 연구비를 편성·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과 연계한 내부교원 연구비 지급이 가능하며,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의 '연구용역비' 목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단,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 운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내 세부기준(p.83~84)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Q06.** 교원 개인연구비의 경우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A06.** 사업 취지\*와 부합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된 연구비 지원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연구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분야 육성,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공동 연구 등 '국립대학육성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에 한함

**Q07.** 국립대학 회계 집행지침 '운영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A07.**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 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도록'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동 사업관리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 교직원이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경우 강사료 또는 원고료를 '운영수당'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Q08.**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의 '운영수당' 집행방법에는 '6)교육훈련 등에 따른 강사료'의 지급단가 및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내부교직원 강사료 지급 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A08.**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운영수당 집행 시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 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관리지침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리지침(p.9) : 강사료,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강사료(p.63~66)' 기준을, 자문료 및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등(p.62)' 기준 내에서 대학 자체기준(지침) 등을 마련하여 집행

**Q09.**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에 따르면 7개의 '세부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내역 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 ①인건비, 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③네트워크활성화 지원·운영비, ④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비, ⑤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⑥장학금, ⑦기타사업운영비

**A09.** 동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세부내역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의 연도별 총 예산 범위내에서 각 세부내역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으나,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Q10.**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로 코스 분담금 및 전자저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비율 제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A10.** 사업추진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은 가능하며, 별도의 비율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해당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1.** 사업비 교부 전 대학자체 계획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이 가능한데, 이 때 반드시 사업추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11.** 매년도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 수립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연속성을 고려하여 '20년 사업비 교부 또는 확정 전에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 관련 FAQ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 전에 대학 자체회계로 선집행한 금액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가능합니다.

**Q12.** 사고이월금의 경우에도 집행액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A12.** '19년 사업비의 경우, 사업기간 중 원인행위를 한 사업비(사고이월 등)의 경우 집행액으로 보았으나, 국립대학회계 상 '사고이월'은 이월액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대학 회계와 사업비 기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사업비부터는 아래와 같이 집행액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년도 사업비 집행인정)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출납폐쇄기한)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이월승인 불필요)
- 단,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출납폐쇄기한) 지출 불가한 사항의 경우, 이월액으로 포함하여 재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 총 사업비의 10% 이내

**Q13.**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예산변경 시 국립대학 회계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A13.** 사업계획의 수정이 없는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만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집행 지침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Q14.**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예산 중복집행 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14.** 재정지원사업별로 특수한 목적이 있으므로,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 사업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참여(수혜) 대상만 다르게 하여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복집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Q15.**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 재학생을 보조요원으로 단기 활용(일용직 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관리 지침 세부내역의 어느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나요?

**A15.**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력 활용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또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Q16.**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협력대학 교수에게 우리대학 사업비로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A16.**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한 공동연구 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협력대학과 사업비 공동부담에 대한 배분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종료 후 정산 절차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17.** 사업 추진에 따라 시상금(품) 또는 상품권(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 기념품 제공 등이 가능한지요?

**A17.** 일반적인 대학 홍보 또는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독려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제작은 불가능하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자 대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 모두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학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18.** 위 질문과 연계하여 사업비의 직접수혜 대상은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의 경우에도 재학생 대상으로만 지급가능한가요?

**A18.**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추진 상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외부인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19.** 사업 추진 시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를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매한 도서에 대하여 중앙관리(배포 후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A19.** 도서관 등의 자본 형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 도서구입의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매의 경우는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비로 볼수 있으므로 중앙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 관련 FAQ

**Q20.**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재학생 신분으로 참여하였으나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A20.**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자체 기준에 지급유예, 지급불가 규정이 없고 수혜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금 대상선발 시 휴학생 등 상황변동에 따른 지급 불가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장학금 대상자 선발 후 장학금 지급까지의 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권장합니다.

**Q21.**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전담과정(학과) 운영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및 학위과정 강의료, 학과 운영비 등 집행이 가능한가요?

**A21.** 후학습자 전담과정의 경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 과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전담과정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위과정(정규과정)에 대한 강의료는 불가하나, 사업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과정 강의료 등은 집행 가능합니다. 학과 운영비의 경우, 일상적 경상경비의 집행은 불가하고,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일반수용비 등(관리지침 기타사업운영비 정의 참고)은 집행 가능합니다.

**Q22.**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원격 강의 강사료와 관련하여, 콘텐츠 제작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더불어 동일한 강의 영상을 다회 송출할 경우, 강사료의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요?

**A22.** 원격 강의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에 따른 개발비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한 강의 영상의 단순 반복 송출 횟수에 따라 동일하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녹화 방식이 아닌 실시간 원격 강의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Q23.** 대학의 경상경비는 집행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3.**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요금, 사업과 무관한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Q24.** 사업비 집행의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5년 간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반드시 종이영수증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전자시스템으로 보관 및 관리해도 되나요?

**A24.** 카드사로부터 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종이영수증(매출전표)은 생략 가능합니다.

※ 영수증 증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사업자가 전자문서(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 현재도 전자보관 가능  
정산 시(정밀정산, 현장점검 등) 증빙 확인이 가능한 범위 하에서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판단·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25.** 사업추진과 관련한 용역계약 체결 시 당해연도 회계기간을 벗어난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예)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0.3.1. ~ 2021.2.28. / 용역사업 계약기간 : 2020.9.1. ~ 2021.4.30

**A25.** 사업기간 내에 용역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계속사업임을 고려하여 차년도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타당하다면 가능합니다.

**Q26.**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아닌, 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채용한 직원을 고용계약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담직원으로 직무를 변경하였을 경우, 동 사업비로 인거비 지급이 가능한지?

**A26.** 근로계약서 상 업무수행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업무를 전담함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동 업무를 수행한다면 가능합니다.

**Q27.**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이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졸업유예생'에게는 실습지원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27.** 대학 학칙에 졸업유예생이 재학생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는 집행 불가합니다.

**Q28.** 내부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직무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8.**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동 사업 목적과 사업계획과의 연계 등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통상적인 교직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예: 교직원 연말정산 교육, 신입교원 오리엔테이션, 교직원 워크숍 등)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 관련 FAQ

**Q29.** 교원 또는 대학원생의 논문 게재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A29.** 해당 논문이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교수 개인 또는 대학원생 연구 관련 논문게재료는 지원 불가합니다.

**Q30.**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 대학 또는 기관과의 문화/체육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30.**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네트워크는 교육 또는 연구 등과 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도출이 가능한 내용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단순 대학 간 일회성 행사에 동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31.**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려 합니다. 이때 사업비로 시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31.** 사업목적에 부합된다면 지역주민 대상의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며, 시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Q32.**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32.**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조정 등 재단에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계획이 변경된다면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합니다. 단,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대학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이 단지 예산의 이전용 등의 비목변경인 경우에는 대학 내부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Q33.** 교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업책임자, 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추진기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별도로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33.** 사업책임자 변경의 경우 재단에 보고 또는 승인사항은 아니나, 사업정보시스템에 사업책임자 정보를 즉시 수정하시어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위원회 등 대학 자체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변경은 대학 자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PART 3**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부적정 집행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인건비

- 기존교원 및 교직원 수당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인센티브 지급
  - 보직자 활동비 및 보직 수당, 정규 교육과정 강의에 대한 강사료 등
-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인건비 지급
  -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사업과 무관하게 채용된 강사 인건비
  - 사업 전담업무와 무관한 학과 조교 인건비

### 장학금

-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
  -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 재학생에 대해 업무보조 장학금 지급 시,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시간을 계상하여 장학금 지급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 행정고시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단순 사업참여형 성격의 장학금

#### 참고!

- 입학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 지급대상으로 포함 가능
-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
  - 특정 자격증 취득만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지양
  - 자체 경진대회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이 필요한 경우, 우수자 선발기준 또는 장학규정 등 내부 기준을 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및 동일·부실 교안에 대한 원고료 지급
  - 기존 교재의 일부를 발췌·편집하거나 교육 콘텐츠 제공업체의 공개 콘텐츠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개발비 지급
-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한 지원금 지원
  - 사업과 무관한 외국어 자격증 시험 응시로 단순지원, 정규 교과목 교재 구입
  - 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프로그램 지원(관광지, 박물관 관람 등 체험학습에 사업비 집행)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비, 타사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집행(중복집행)
- 사업 무관 경비 및 통상적 경비
  -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비 및 워크숍 비용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사업과 무관한 부설기관의 운영비성 경비

**참고!**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개설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 등의 개발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 가능
  - 교재의 일부분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한 경우 해당 산출물에 근거하여 원고료 지급가능하나,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 개정판인 경우 정오표 등에 근거하여 원고료 산정
- 외국어 시험 응시료의 단순지원이 아닌,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활동 권장
- 프로그램 참여학생에게 사회 통년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대장 관리)
- 경진대회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발기준에 따라 시상금 지급 가능
-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 일정기간 종료시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수령하여 첨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운영비

- 사업과 무관한 각종 협의회 회비 및 워크숍 참가비
- 교수 개인의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교류 활동비 및 회비

#### 참고!

-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분담금 집행 가능
- ▣ 사업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 시 협의회비 집행 가능(예: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분담금)

###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개선비

- 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등

#### 참고!

- ▣ 기존 건물과 건물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하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교육·연구 활동 공간에 한하여 환경개선 가능

###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사업과 무관한 교육 또는 연구목적 이외 장비 구입
  - 교수 개인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사업과 연계하여 학생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물품)
  - 교수 개인 연구실 비치 물품(냉장고, 공기청정기, 개인용 PC 등)
- 기자재 구입 이후 관리 부실(자산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자재 결과물 표기문구가 없는 자산)

#### 참고!

- ▣ 환경개선비에 포함하여 구입한 기자재의 경우에도 자산관리대장에 포함하며, 기자재 표기문구 부착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부적정 집행사례

**기타사업운영경비**

- 대학의 경상비 성격의 경비
  - 대학 시설 유지 관련 공공요금, 제세 등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관련 경비(입시설명회, 교원 워크숍 등)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학회 연회비 등 교수 개인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 사업과 관련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대학브로셔, 리플렛,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 회의비 부적정 집행
  - 사업관리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구입, 회의비 지출 시 세부증빙 내용 및 참석자에 대한 지급 증빙이 없이 집행

**참고**

- 사업 참여홍보 또는 사업성과 홍보를 위한 활동 및 홍보물 제작 등은 집행 가능
- 회의비는 대학 내 집행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회의록 구비(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포함)
-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운영)부서 사무용품, 담당자 PC구입비 등 집행 가능

**네트워크영역 우수사례 발표**  
**[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

---

김충경 목포대학교 실장





목 차	
①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목표
②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사업개요
③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내용 - 지역협력사업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보존 - 국제협력 네트워크
④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사업결과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1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사업목표



### 전남 서남권의 지역발전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마련 및 역할 확대

-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지역현안 문제 해결·협력사업 발굴
- 대학 구성원·대학기구·정부지원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정책 방안 도출



### 국립대학의 지역사회 책무성 강화 지역발전 구심적 역할 수행

- 문화, 복지, 소외계층지원, 정책기획, 국제협력, 대학 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립대학의 역할 수행

국립목포대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1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사업개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실무 운영위원회

현안 발굴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지역현안
정책기획
문화행사
소외계층 지원
국제협력

지역협력활동 연계


국제 네트워크 공유사업

지역 특화콘텐츠  
보존 제작



지역기존 사업 연계

기업지원  
창업지원



LINC+연계

국립목포대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1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성과

MNU지역발전 상생포럼 추진체계 및 전략

- MNU지역발전 상생포럼 - 포럼 및 실무위원회 개최 - 정책반영 및 성과 공유
- 협의체 구성

구분	역할	참여대상
MNU지역발전 상생포럼	- 현안문제 및 발전방향 도출 -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 목포대학교 총장 - 기초지자체장
MNU지역발전 상생포럼 실무위원회	- 정책기획 및 협력방안 실무논의 및 조정 - 지자체 현안사업 수요조사	- 목포대 및 지자체 실무담당자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확대	- 지역현안문제 공동대응 및 해결방안 도출	- 전남도 및 22개 시·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국립목포대학교 03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3 목포대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NU지역발전 상생포럼  
구축 및 운영**

- 전남 서남권 지자체 업무협약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완도군)

**교육기관 업무협약**

- 전라남도 교육청
- 전남도립대학교
- 문태학원

**유관기관-주요기업**

- 사회복지기관
- 공공기관(상공회의소, 해양수산청 등)
- 현대삼호중공업

국립목포대학교 04



### 3 목포대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지역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국립목포대학교

05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MNU지역발전 상생포럼 네트워크 운영



##### 지역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역 공동체 협력사업
- 지역생활문화축제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보존

- 지역기록관실 구축 및 운영
- 지역 특화자원 콘텐츠 제작



##### 국제협력 네트워크 공유

- 지자체·공공기관 국제 네트워크 공유

국립목포대학교

06



지역 공생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지역사회의 요구를 발굴하여 대학전문가(연구소, 교수, 대학원생 등)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현안 해결사업

```

    graph LR
      A[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요조사] --> B[연구자 매칭  
(대학 교수 및 연구자 등)]
      B --> C[사업수행]
      C --> D[성과보고]
    
```

국립목포대학교

07

지역 공생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 지역공동체 협력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인권교육

지역청소년 상담사  
교육

교양강좌

국립목포대학교

09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에 공헌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 지역생활문화축제 - 목포 夜(야) 놀자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2020. 10월 23일(금) ~ 24일(토)
- 목포진 역사공원
- 체험프로그램 3종 :  
근대 목포거리3D재현 VR, LED등만들기, 목포가 반짝반짝
- 전시프로그램 4종 :  
캘린더 제작전시, 모던콜렉션, 입체벽화포토존, 네온사인포토존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에 공헌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 지역생활문화축제 - 전시공연기획



국립목포대학교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 복나눔멘토링

목포대학교	전라남도교육청	(사) 복을나누는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 육성·선발·관리</li> <li>- 멘토 육성 정규교과목 개설</li> <li>- 멘토 장학금 관리 및 운용</li> <li>- 행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티 선발 및 안전교육</li> <li>- 교재비 등 멘토링 보조금 지원</li> <li>- 교육 장소 제공 (중학교 3개소)</li> <li>- 관리 교사·관계자 연수</li> <li>- 멘토링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 선발 및 관리 협조</li> <li>- 프로그램 운영 행정지원</li> <li>-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 <li>- 멘토 장학금 지급</li> <li>- 후원자 및 후원금 관리</li> </ul>



국립목포대학교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지역특화자원 콘텐츠 보존 제작

지역의 문화, 예술, 산업, 사회복지 분야 자료를 DB화 및 지역과 공유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등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

##### 지역 자료집 디지털화

- 전라남도 향토사 등 140건 DB화
- 목포, 신안 향토사 및 기타지역 자료 200건 DB화 중

##### 영상제작

- 섬,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 역사의 다양성이 숨쉬는 보물창고
- 대학,지역과 함께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다



### 3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주요 추진 내용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역과 함께하는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2020 국립대학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 4 목포대 지역발전 상생포럼 우수성 및 향후 추진계획



**사업의 우수성**

지역 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기여  
지자체-공공기관-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과 상생발전 도모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지역 우수 특화자원 개발 및 공유 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발굴 추진

국립목포대학교

16









